

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1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07. 08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 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2항제4호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1)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,
-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과세(4% → 0.25%)로,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 분리과세(4%)로 부과한 세액의 90%를 감면

1) 유흥주점 : 영업장의 면적이 100㎡ 초과 +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 +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(2021.06.08.)에 따라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동법 제4조제2항제4호에 의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